

최고의 보증 서비스로 조합원과 소통하는 광주·호남지점



1년여 만에 다시 찾은 광주·호남지점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지만,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광주·호남지점만의 열정은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위를 녹이는 따스한 겨울의 햇볕을 뜻하는 “빛고을 광주”에 맞게 사무실에 넓게 트인 창문으로는 추운 날씨도 잊게 해줄 만큼 따뜻한 햇볕이 가득하였다.

광주·호남지점은 광주와 전주, 순천에 지점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조합원에게 최고의 보증서비스 제공·조합원과 소통하는 지점구현을 지점의 내부 실천목표로 설정하고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또한 지점장을 중심으로 조합원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의 기본은 직원의 자질향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매월 1회 이상의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을 담당자 별로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일과시간 이후 7시까지 민법을 직접 강의하며 직원들의 기초실력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2016년 1월부터 지점을 이끌어가고 있는 신동철 지점장은 본부의 관리부 및 기획조정실 등 정책부서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호남지점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점탐방

지점의 중점실천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지점장은 “변화하는 지점, 다가가는 지점, 실천하는 지점”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지점의 운영은 지금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되며, 조합원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다가가는 서비스 추진 등 실천 중심의 과제를 설정하여 변화하고 실천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지점 분위기는 직원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점장은 직원들의 열정을 북돋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지점이 지향하는 목표, 조합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이었다. 🇸🇰

〈광주 · 호남지점 조합원 수〉

2016. 2월 현재

구 분	계	지점	전주사무소	순천사무소
업체수	862	367	255	240



앞줄 왼쪽부터 신동철 지점장, 박춘성 과장,
 뒷줄 왼쪽부터 박재빈 과장, 박현우 차장, 김윤선 과장



조합은 항상 조합원을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합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 · 호남지점 및 해당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 및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연락처 : 광주 · 호남지점(062-514-0790)

전주사무소(063-262-8934)

순천사무소(061-724-5521)

전문·기계설비공제조합, 금융약정 댄 서면으로 체결해야



원정호
건설경제신문 금융부 기자

- 2월부터 개정민법 시행 - 보증기관의 전자보증 예외 허용되지만 연대보증은 서면만 인정

2월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들은 금융거래를 위한 약정 시 이들 조합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개정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포함된 약정은 인터넷 약정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제를 유지하고 있는 전문조합과 기계설비조합과 달리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11월 연대보증을 폐지한 덕에 지금처럼 인터넷 약정을 하면 된다.

2월부터 서면 보증만 인정하고 전자 및 인터넷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개정민법이 시행된다.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에 따른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거래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개정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신설 조항에 따르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시행되면서 기관보증 등 전문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해 하는 보증의 경우 전자보증의 효력을 인정한다.

전자보증이 국내 보증거래의 70%, 연간 427만 건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공제조합과 같은 보증기관이 발급한 전자 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로써 전자보증 효력 상실로 인해 우려됐던 국민적 불편과 사회적 비용 부담 가중 등 ‘보증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민법 개정 추진으로 보증대란 우려가 크자 더불어민주당 김운덕(전주 완산갑)의원,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의원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대책마련에 나선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기고


이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보증의 효력을 되살리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보증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국내 10여개 산업별 공제조합들의 경우 보증거래의 90% 이상을 전자보증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을 서두르면서도, 전자보증이 무용지물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며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보증기관의 전자보증 효력은 살아났지만 조합원의 한도거래 약정과 관련한 불편은 불가피하다. 전문조합과 설비조합은 조합원들의 금융거래를 하려면 연대보증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는데, 이 연대보증은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조합과 기계설비조합은 전체 약정의 70% 이상을 인터넷으로 체결해 온 터라 조합원들의 불편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인터넷 약정이 불가능하고 연대보증인이 직접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으나, 이는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춘 업무 변경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연대보증을 폐지한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은 지금처럼 인터넷 약정이 가능하다. 건설공제조합은 개인 연대보증인의 과도한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없앴다. 

약정체결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인터넷 약정	가능	[불가능] 예외 • 연대보증인없이 체결하는 약정 • 개인사업자 조합원의 약정
대리인에 의한 위임 약정	가능	[불가능] 연대보증인은 조합직원 입회하여 자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원칙 예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 연대보증인이 조합방문하여 약정시 ‘위임약정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1년 이내의 약정은 연대보증인의 조합방문 없이 가능



민법개정에 따른
조합 지점(사무소)
방문 약정 제도 시행

민법개정에 따른 조합 지점(사무소) 방문 약정 제도 시행

보증인이 신중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민법이 개정되어 2월 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현재 온라인지점을 통한 전자약정은 이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월 4일부터는 불편하시더라도 연대보증인(대표자)이 지점 또는 사무소에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만 약정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약정이 불가능해지고 연대보증인(대표자)이 직접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으나, 보증인 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춘 제도 변경 사항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융자)채무 약정방법 안내

가. 약정의 의의

건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를 발급 받거나 융자를 받기에 앞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법인의 대표자 개인 또는 최다주식보유자)이 조합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과 조합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나. 약정의 종류

(1) 한도거래용 보증(융자)채무약정

조합원별 보증 및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 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2) 개별거래용 보증(용자)채무약정

한도거래용채무약정과는 달리 매 거래마다 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다. 약정체결시 구비서류

(1) 지점(사무소) 방문 시

(가) 약정인

법 인	개 인
1. 약정서(조합소정서식)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법인인감증명서	1. 약정서(조합소정서식) 2. 개인인감증명서 3. 본인확인증(조합소정서식)

(나) 연대보증인

구 분	약정인 대표자	최다주식보유자
개 인	1. 개인인감증명서 2. 본인확인증(조합서식)	1.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사본 2. 개인인감증명서 3. 본인확인증(조합소정서식)
법 인	-	1.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사본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본인확인증(조합서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 ※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자연인으로서 조합직원 입회하에 약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3) 약정체결 시 유의사항

- (가) 약정연대보증인이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조회결과 채무불이행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입보가 불가합니다.
- (다) 약정연대보증인이 신용회복지원, 회생절차개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용자 등 약정인의 기존채무를 포함하여 출자지분액 범위 내에서만 입보할 수 있습니다.



민법개정에 따른
조합 지점(사무소)
방문 약정 제도 시행

(라) 약정체결 후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약정을 갱신하여야 업무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약정인의 약정좌수 감소
- 연대보증인 입보자격의 상실
- 법인의 대표자 변경 또는 최대주식보유자의 변경

(마) 약정체결 후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약정갱신 없이도 감소된 약정금액(보증·용자 한도액)이 적용되어 업무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2014. 8. 1 이후 새로 약정을 체결 또는 갱신한 조합원에 한함)

- 약정인의 신용등급 하락
- 결산지분액의 변동으로 보증한도액 감소
- 조합제도 등의 변경으로 보증한도액 감소

(바) 보증거래약정과 용자거래약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사) 조합과의 보증(용자)업무거래에 사용할 인감(사용인감은 1개에 한함)은 신고하여야 하며, 약정서에는 반드시 원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아) 약정체결시 조합 직원 입회하에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연대보증 조건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최대주식보유자(최다주식 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자격을 동시에 입보)가 연대보증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 대표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항상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1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의 조정 또는 신용평가등급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보증잔액이 보증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